



공무수행사인 안내 서신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임선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평소 사법부에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문심리위원에게 적용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는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와 관련된 금지, 신고 의무 및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등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서는 공무를 수행하시는 범위 내에서는 「청탁금지법」 제11조가 정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공무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관련 금지 규정, 신고 의무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되고, 그 공무 수행과 관련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경우에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별첨과 같이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신고제도에 관해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접수 기관은, 각급 법원(담당공무원,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기관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실,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입니다.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사법부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9.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임선지 배상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안내

2026. 9. .

법원행정처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2024. 12. .

사법지원실

I. 개요

1. 2016. 9. 28. 「청탁금지법」 시행

-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가 핵심 내용임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 금지의 대부분의 규정이 적용됨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제22조, 제23조)이 적용되고,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해당 공무 수행에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해당 공무 수행과 무관한 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2. 공무수행사인이란 누구인가요?

- 각종 법령상 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1조 제1항 제1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11조 제1항 제2호)
- 공무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11조 제1항 제3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11조 제1항 제4호)



II. 부정청탁의 금지

1. 부정 청 탁이란 무엇 인 가요 ? (제5조 제1항)

-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 및 공무수행사인에게
- ▣ 부정청탁 대상 직무(14가지)에 관하여
- ▣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제1호부터 제14호까지)
- ▣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월권하여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제15호)

2. 부정 청 탁 대 상 직 무 (제5조 제1항)

1 인가·허가등 직무 처리	2 행정처분, 형벌부과 등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련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 위반 또는 지위·권한 남용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1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 실시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 2021. 12. 7. 개정 (2022. 6. 28. 시행)으로 추가된 직무

- 3호 - 견습생 등 모집·선발 • 5호 - 장학생 선발 • 10호 - 논문심사·학위수여
- 12호 - 인정(認定) 업무 • 14호 -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3. 부정 청 탁으로 보지 않는 행위 유형 (제5조 제2항)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4.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대응 조치(제7조)

- 최초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 소속기관장 등 신고 접수 기관에 서면으로 신고
 - 신고 접수 기관은 소속기관장, 감독기관(각급 법원의 감사관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실),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 공무수행사인의 소속기관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권한을 위임·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심의·평가 등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을 의미합니다.

5. 부정청탁과 관련된 제재

위반행위	행위자	제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	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부정청탁	일반인	과태료 (2천만 원 이하)
	공직자등 공무수행사인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게 부정청탁	누구든지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자신을 위하여 직접 부정청탁	일반인	제재 없음
	공직자등	징계
	공무수행사인	해촉 등 가능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는 행위	공직자등	징계
	공무수행사인	해촉 등 가능



III. 금품등 수수 금지

1. 금품등이란 무엇인가요? (제2조 제3호)

- ▣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 ▣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

2.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제8조 제1항 · 제2항 · 제4항)

- ▣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공무 수행과 관련된 금품등 수수 · 요구 · 약속에 한하여 제재
- ▣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동일인으로부터
 -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 · 요구 · 약속한 경우 ➡ 형사처벌
 - 위 금액 이하 금품등을 수수 · 요구 · 약속한 경우 ➡ 과태료

3.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대응 조치(제9조)

-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 · 약속 · 제공 의사표시 받은 경우 ➡ 지체 없이 소속기관장 등 신고 접수 기관에 신고 및 지체 없이 반환 · 거절 의사표시 또는 신고 접수 기관에 인도
- ▣ 배우자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 · 약속 · 제공 의사표시 받은 사실을 공무수행사인이 알게 된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가 필요



4.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 제3항)

1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 음식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 5만원 이하 선물 등	3 사적 거래(증여제외)로 인한 채무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들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 친족 :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5 공직자 관련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거나 장기·지속적 친분자가 질병 등으로 곤궁한 공직자에게 주는 금품등	6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3. 8. 30. 개정, 동시행)

①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상향

■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 ⇨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

②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에 포함

③ 설날·추석 선물기간

-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의 기간
- 이 기간 우편 등으로 발송해 이 기간 후 수수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 8. 27. 개정, 동시행)

④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 가액 상향(3만 원' → '5만 원')

5.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관련 제재

제재 대상자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	초과
① 공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요구·약속한 공무수행사인	과태료 (수수가액의 2배~5배)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② 배우자가 공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요구·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수행사인		
③ 공무수행사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약속·제공 의사표시한 사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

- 배우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거부 의사표시·인도 조치한 경우, 제재 면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제도 안내

2026. 9. .

법 원 행 정 처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제도 안내

2026. 9. .

사법지원실

1. 개요

- 「청탁금지법」은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과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규정을 준용하여 공무수행사인에게도 각종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다만,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0조) 규정은 공무수행사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편, 「청탁금지법」 제13조는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신고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 접수 기관은 소관 공공기관(소속기관),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 신고 접수 기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면 됩니다.

2. 공무수행사인 관련 신고

- 부정청탁의 신고(「청탁금지법」 제7조)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 등 신고



접수 기관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청탁금지법」 제9조)

-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 등 신고 접수 기관에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수수 금지 금품등: 공무와 관련하여 수수·약속·제공 의사표시되는 1회 100만 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초과 금품등(형사처벌 대상), 위 금액 이하더라도 공무와 관련하여 수수·약속·제공 의사표시되는 금품등(과태료 부과 대상)

- 공무수행사인이 자신의 배우자가 공무수행사인의 공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에도 소속기관장 등 신고 접수 기관에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공무수행사인은 자신이 공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약속·의사표시를 받거나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의 공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약속·의사표시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 신고 이외에도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표시를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다만,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등 신고 접수 기관에 인도하는 조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약속·의사표시에 관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거부 의사표시·인도한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와 관련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가 면제됩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청탁금지법」 제13조)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 접수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신고자 보호 및 보상

- 「청탁금지법」 상 신고자에 대하여는 신고자 비밀보장,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자 책임감면 등 신고자 보호 규정이 적용됩니다.
-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그 신고로 인하여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공공기관의 비용이 절감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각각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4. 신고 접수 기관

- 신고 접수 기관은, 각급 법원(담당공무원, 청탁방지담당관 또는 기관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실,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입니다.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실(02-3480-1216)

※ 신고서식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